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의 진상규명 기간 연장 등 〉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3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원회의 진상규명 기간 연장	3
2.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 확대	10
3. 생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14
4.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신설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 각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한편,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필요성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 또한 제기되었음.

이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Ⅲ. 검토의견

1. 위원회의 진상규명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상규명 기간을 2022년 7월 27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 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 ----- ----- ----- -----3년-----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위원회의 기능>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애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현행법은 2022년 7월 27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을 통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심의, 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1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2024년 7월 26일에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인 2025년 1월 25일 현재 초안 작성까지 완료된 상태임.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207건의 진상규명 신고를 접수하였고, 해당 조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5년 3월경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현행법 개정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및 위원회 활동기간>

구분	일자		진상규명 기간	위원회 활동기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6개월 포함)
	개정일	시행일		
제정	2013.6.4.	2013.12.5.	3년	2014.10.13.~2018.4.12.(3년 6개월)
1차 개정	2018.12.24.	2018.12.24.	1년	2018.12.24.~2020.6.23.(1년 6개월)
2차 개정	2020.6.9.	2020.6.9.	1년	2020.6.9.~2021.12.8.(1년 6개월) ※ 조사보고서(1차) 발간 '22.2.
3차 개정	2022.4.26.	2022.7.27.	1+1년	2022.7.27.~2024.1.26.(2년 6개월) ※ 조사보고서(2차) 발간 예정('25.1.25.)

<위원회 활동 경과>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3.6.4.)
및 시행령(2013.12.4.) 제정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출범(2014.10.13.)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설립(2018.10.10.) 및 지원
- 국가기념일 지정(2019.9.24.) 및 정부주관 40주년 기념식 개최(2019.10.16.)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4차: 2022. 7.27. 시행)
- 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 1년(2024.7.26.까지) 연장(2023.4.19. 대통령실,
국회 보고)
-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2025.1.25.까지)

※ 자료: 행정안전부

<진상규명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4월
신고접수	207	-	15	-	3	159	3	15	-	11	1	-
신 고	36	-	15	-	3	4	3	11	-	-	-	-
직권상정	16	-	-	-	-	-	-	4	-	11	1	-
보고회 시 조사요구	155	-	-	-	-	155	-	-	-	-	-	-
처리현황	195	-	-	-	-	-	-	-	195	(조사중)	(조사중)	-

※ 자료: 부마민주항쟁지원보상단

그런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관련자 및 유가족 등에 따르면 신고 접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자체 내부조사 결과 2021년 3월 새롭게 확인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531명 중 204명과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 48명 등 총 254명에 대한 조사가 현행법에 따른 조사기만 만료로 인해 완료되지 않아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기간을 2022년 7월 27일부터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해결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통합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현행	개정안
조사기간	2022.7.27.~ <u>2023.7.26.</u>	2022.7.27.~ <u>2025.7.26.</u>
기한 연장시 조사기간	2022.7.27.~ <u>2024.7.26.</u>	2022.7.27.~ <u>2026.7.26.</u>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2024.7.26.~ <u>2025.1.25.</u>	2026.7.26.~ <u>2027.1.25.</u>

다만,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는 달리 진상규명 신청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조사기간 종료 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장되는 조사기간의 적정한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¹⁾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조사 신청의 추가 가능성, 추가적인 조사 수요, 진실규명 조사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한편, 개정안은 연장되는 조사기간의 시작점을 현행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2일부터로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의원실 확인 결과, 연장되는 조사기간의 시작점은 현행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2일이 아닌 개정될 법률의 시행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제6조 제1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입법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대표발의의원실 입장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 -----18845호----- -----2022년 7월 27일을----- -----3년----- -----.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 -----〇〇〇〇〇호-----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을-----3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또한, 개정안에 따른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현행	개정안
조사기간	2022.7.27.~ <u>2023.7.26.</u>	개정안에 따른 시행일부터 <u>3년</u>
기한 연장시 조사기간	2022.7.27.~ <u>2024.7.26.</u>	개정안에 따른 시행일부터 <u>3년+1년</u>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2024.7.26.~ <u>2025.1.25.</u>	조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u>6개월</u>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세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진상규명 기간이 9년에 이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건의 발견 또는 '21년 이후 신규 신고 사례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조사기간 연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개정안은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대해 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거나, ③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① ----- ---, <u>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u> ----- ----- ----- ----- ----- <u>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2018년에 설립되어 학술자료사업, 교육사업, 기념문화사업, 정신계승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8년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내역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현황2)>

학술자료사업	교육사업	기념문화사업	정신승계사업
·부마민주항쟁 학술연구 지원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 총서 발간 ·구술채록 및 사료수집	·부마길(부산/마산) 현장 탐방 ·부마길 해설사 양성 및 보수 교육 ·시민학교 및 민주캠프 운영	·부산국제영화제(BIFF) 연계 ·아카이브 전시 및 뮤지컬 공연 ·민주영화제 및 음악제 개최 ·창작곡 및 문학상 공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개최 ·장학생 및 관련자(개인/단체) 지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지급액	235	3,500	2,200	2,056	1,860	1,860	1,404	13,115
집행액	235	3,500	2,200	2,056	1,860	1,860	1,404	13,115

※ 2024년은 12월 31일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등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재단 수행 사업에 대하여 ‘기념사업’ 외에도 진상규명 조사·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복지증진 등을 추가 규정하는

2)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자세한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한편, 재단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외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금을 출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내용은 기존에 위원회가 수행(진상규명 관련 업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하거나 재단이 정관(관련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인 장학생 및 관련자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입법 시 일정부분 역할이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정관>

제4조(목적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부마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과 추모사업.
2. 부마민주항쟁정신을 정립, 계승하는 진상규명사업.
3. 부마민주항쟁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4. 부마민주항쟁정신을 계승하는 홍보, 출판사업.
5. 부마민주항쟁정신을 기념, 계승하는 장학사업.
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사업.
7. 부마민주항쟁정신을 기념, 계승하는 시상사업.
8. 부마민주항쟁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 인권 단체와의 연대사업.
9. 그 밖에 목적에 들어맞는 사업.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이에 따른 기대효과, 국민적 공감대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내용이 현 위원회 역할과 중복되거나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개정 실익이 미미하고, 유사 입법례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규정(제21조의2)도 현행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관련 규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학술사업

4.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3. 생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1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u>30일</u> 이상 구금된 자 2. (생략) 3. 재직기간 <u>1년</u> 이상인 해직자 ② · ③ (생략)	제22조(생활지원금) ① ----- ----- ----- -----. 1. ----- <u>1일</u> ----- ----- 2. (현행과 같음) 3. ----- <u>6개월</u>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본인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행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 본인 및 그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각각 1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려

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구금된 자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대상	현행	개정안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구금된 자	<u>30일 이상</u>	<u>1일 이상</u>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그 정도가 경비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좌동
해직자	<u>재직기간 1년 이상</u>	<u>재직기간 6개월 이상</u>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현행법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64년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개정안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기준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77	491	4	16	20	204	10	26	9	24	4	16	11	45	4	101	8	34	3	14	4	11

※ 자료: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개정 시 생활지원금 추계>

구분	총 지급액	대상자*	총 구금일수	단가	기준
구금자	714,607,223원	661명	8,789일	81,307원/일	시행령 제19조 ①
해직자	5,868,000원	2명	-	2,934,000원	시행령 별표4

* 관련자로 인정된 자 또는 자료 등에서 확인된 통계로 추정(위원회에 관련자로 신고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예산 추계는 불가능)

※ 자료: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의 필요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타 과거사 관련 보상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생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는 추가 재정 소요를 수반하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4.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신설(안 제34조의2)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에 대해 정부의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활동 종료 후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4조의2(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u> <u>③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고, 반입된 기록물을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재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현재 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정부기관(국방부, 육군, 검찰 및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한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로서 비공개 중이나, 이러한 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수집기관의 의견을 들어 기록물을 공개함.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정부와 군이 보유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며 반입된 기록물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에 대한 국가의 보존 의무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정부와 군이 보유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는 개인신상정보나 군사기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도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기록물을 공개하는 점을 감안할 때,⁴⁾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개정안의 입법화는 관련 기록물 공개 필요성 및 의의, 기록물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및 군사기밀 등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이관

-
-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되, 그러한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⁵⁾

이에 따라, 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료하고 폐지될 경우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기록물 이관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화 여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⁶⁾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의 이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며 반입된 기록물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보관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보관하는 자료일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하는 등 관련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⁷⁾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한편, 다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후 부마민주항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병합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타 과거사 관련 위원회도 동 법률 상 절차를 따르고 있는 점,

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정안 입법으로 향후 재단 등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을 관리할 경우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인력 등 추가 비용 발생, 기록물 이용자의 접근성 제약 및 보안 문제 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24.12월말 기준)

(출처 : 부마보상지원단)

□ 기본 현황

- **(설립근거)** 「부마민주항쟁보상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4조
※ 설립(2018.8.22.), 비영리법인 행안부 허가(2018.10.10.)
- **(이사장)** 박상도(1946.2.16.), 임기('24.10.1.~'27.9.30.), 주요경력(전)부산 YMCA 이사장
- **(설립목적)**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 **(주요사업)**
 -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하는 기념 및 추모사업, 진상규명사업
 -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장학사업
 -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민주인권 단체와의 연대사업 등
- **(임원)** 23명(이사장 1, 상임이사 1, 이사 19, 감사 2) / 임기 3년
※ 임원 임기: 3년(이사장 임기를 기준으로 주사무소를 부산, 마산간 변경)
- **(사무기구)** 2개 사무처(부산·마산, 총 13명), 제3기 주사무처:부산(초량동)

구분	계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처장	3급	4급	5급	기간제
정 원	15	(1)	1	2	4 ⁴ (파견2포함)	4	4	-
현 원	13	(1)	1	2	2	4	4	-
부산사무처	8	(1)	1	1	1	3	2	-
마산사무처	5	-	-	1	1	1	2	-

* 지자체(부산, 창원) 파견 2명 포함: 현원 없음

□ 재정 지원

- **(지원근거)** 부마항쟁보상법 제16조
- **('25년 예산)** 14.04억 원(국비 100%)
 - 인건비 6.76억, 사무처(부산·마산·총괄) 운영 3.48억, 정신계승(기념식포함) 1.29억, 학술사료 0.73억, 교육사업 0.45억, 기념문화 0.94억, 홍보 0.39억

□ 임원진 명단(23명, 상임 1명 포함)

연번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1	이사장	박 ○ ○	전국 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2	상임이사	김 ○ ○	전) 부산민주공원 관장
3	이 사	이 ○ ○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4	“	이 ○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5	“	김 ○ ○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부회장
6	“	양 ○ ○	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 사무처장
7	“	이 ○ ○	부산민주공원 관장
8	“	변 ○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사
9	“	유 ○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0	“	정 ○ ○	전)창원특례시 부시장
11	“	곽 ○ ○	(주)울산저널(대표)
12	“	이 ○ ○	민변 부산지회 지부장
13	“	안 ○ ○	해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4	“	정 ○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15	“	진 ○ ○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조교수
16	“	김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7	“	박 ○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18	“	김 ○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19	“	남 ○ ○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20	“	김 ○ ○	경남교육청 사무관
21	“	-	선임 진행중
22	감 사	이 ○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감사
23	“	강 ○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